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95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 김성원·유용원·김승수

배현진 • 조경태 • 이종배

김종양 · 최은석 · 송언석

조승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방해행위를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의 경우현행법에 따른 강제 처리 요건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 처리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실제처리에 착수하는 것이 늦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일정한 장소"를 "일정한 장소(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를 포함한다)"로, "운행"을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정한 곳으로"를 "지체 없이 일정한 곳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u>일정한 장소</u> 에 고	1 <u>일정한 장소(공중이</u>
정시켜 <u>운행</u> 외의 용도로 사	통행하는 장소로서 공동주택
용하는 행위	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
	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를 포함한
	<u>다)</u> <u>교통을 방해하거나</u>
	<u>운행</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②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	
를 <u>일정한 곳으로</u> 옮긴 후 국	<u>지체 없이 일정한 곳으로</u>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	
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	

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